

본 자료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으며,
정확한 문구 및 내용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정기결산 관련 유의사항

1 정기주주총회 절차 개요 및 신고사항

<p>주주총회 6주전* (상법 제447조의3, 외감법시행령 제8조) *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4주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내부결산 완료 → 결산실적 공시(내부결산 확정 시) (매출액·손익구조 30%(대규모법인15%) 이상 변동, 자본잠식 50%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)
<p>주주총회 2주전 (상법 제542조의4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결산 이사회 개최 → 현금·현물배당 결정 공시
<p>주주총회 1주전 (상법 제448조, 외감법시행령 제27조, 상법시행령 제31조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 →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
<p>주주총회일 (상법 제449조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주주총회 소집통지·광고
<p>결산일 종료 90일 이내 (자본시장법 제159조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외부감사 종료 및 감사보고서 수령 →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 ■ 사업보고서 제출 → 상법상 발송 및 게재 전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有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주총회 개최 및 재무제표 승인 등 → 주주총회 결과 공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사업보고서 제출(기한 : 2026.03.31.)

2 내부결산실적공시

공시내용

-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,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30% (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법인의 경우 15%)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사실이나 결정이 있는 때 공시
- 자본잠식 50%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결정이 있는 때 공시

공시시한

- 상장법인 내부결산 확정시 공시

체크포인트

- 매출액 규모 확인
 - ①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
 - ➔ 감사보고서 제출일 다음날 관리종목 지정
 - ②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에도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
 - ➔ 감사보고서 제출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
- ※ 개별/별도·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, 지주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 적용

■ 자본잠식 여부 확인

① 자본잠식률이 50% 이상인 경우

* 자본잠식률 = (자본금 - 자기자본) / 자본금 × 100

➔ **감사보고서 제출일 다음날 관리종목 지정**

※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지정 사유 발생 시, 감사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해당 사유를 해소 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관리종목지정 여부 심사

② 자본잠식률 50% 이상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에도 자본잠식률이 50% 이상인 경우

➔ **감사보고서 제출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**

③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
➔ **사업보고서 제출시 상장폐지 절차 진행**

< 공시기준 재무제표 >

구분 (K-IFRS 적용 기준)	종속회사無	종속회사有	지주회사
자본금 50% 이상 잠식*	개별	연결	연결
매출액 50억원 미만	개별	연결/별도	연결

* 연결재무제표 기준에서의 자본총계는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수치로 적용

▶ 【TIP】 자본잠식 관련 실질심사

자본전액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* 발생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내 해당 사유를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그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,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 검토 진행

*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

참고사항

■ 주권 매매거래정지

- 내부결산실적 공시상 자본잠식 50% 이상 및 매출액 50억원 미만 등 중요내용공시가 있는 경우 30분간 매매거래정지*

* 단, 내부결산실적 공시상 **상장폐지 기준 해당시 매매거래정지 계속됨**

★ 중요내용 공시로 인한 매매거래 정지

- 공시시점이 9시 이전인 경우 공시시점부터 9시 30분까지 매매거래정지
- 공시시점이 9시~14시 30분인 경우 공시시점부터 30분간 매매거래정지
- 공시시점이 14시 30분 이후인 경우 공시시점부터 익일 9시까지 매매거래정지 (정규시장 호가는 익일 8시 30분부터 가능)

- (관리종목지정) 감사보고서상 감사범위제한 한정, 자본잠식 50% 이상 (최초연도) 및 매출액 50억원 미만(최초연도) 등으로 관리종목지정 되는 경우 공시시점부터 익거래일(관리종목지정일)까지 매매거래정지
- (상장폐지 기준 해당*) 감사보고서상 공시내용이 감사의견 부적정/의견거절, 감사범위제한 한정(2년연속), 자본전액잠식/자본잠식 50%이상(2년연속), 매출액 50억원 미만(2년연속) 등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공시확인 시점부터 상장폐지 확정 후 정리매매 시작일 전일까지 매매거래정지

* (상장적격성 실질심사) ① 2개년도 연속 50%이상 자본잠식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실시 ②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특수목적 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 잠식해소 확인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실시

3 주주총회 소집공고

공시내용

-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회의 일시, 장소, 목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 발송하거나,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 발송

공시시한

- 주주총회 개최일 2주간 전까지 통지 및 공고

체크포인트

- 전자적 공고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대체 가능
 - 일정 소액주주(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보유)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라 **2개 이상의 일간지에 각각 2회 이상 공고**하거나 **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공고**로 소집통지 대체 가능
- 회의 목적사항 확인
 -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, 회의 목적사항
 -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
 -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
 - 경영참고사항 (사업개요,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등)
-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에게 통지
 -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
- 재무제표를 통한 영업실적 확인
 - 내부결산실적 관련 공시*가 없는 경우,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재무제표 확인 가능
 - *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%(大 15%) 이상 변경, 자본잠식 50%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, 영업(잠정)실적(공정공시) 등

4 감사보고서 제출

공시내용

- 외감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해당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함

【TIP1】 감사의견 비적정, 자본금 50% 이상 잠식, 매출액 50억원 미만 등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도 함께 공시

【TIP2】 종속회사가 있는 상장법인(지배회사)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관련 감사의견 및 재무내용 모두 공시

공시시한

- 상장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당일 중 공시
 -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공시

【TIP】 외감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해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므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시, 지연사유에 대하여 상장법인에 문의하는 등 투자유의 필요

체크포인트

■ 감사의견 확인

- ①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
 ➔ 당해 사실 확인일 다음날 관리종목 지정
- ②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
 ➔ 당해 사실 확인시 상장폐지 절차 진행
- ③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
 ➔ 당해 사실 확인시 상장폐지 절차 진행

【TIP】 지주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있는 상장법인(지배회사)의 경우,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모두 적용대상이 됨

■ 매출액 규모 확인

- ①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
 ➔ 감사보고서 제출일 다음날 관리종목 지정
- ②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에도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
 ➔ 감사보고서 제출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

■ 자본잠식 여부 확인

① 자본잠식률 50% 이상인 경우

➔ 감사보고서 제출일 다음날 관리종목 지정

② 자본잠식률 50% 이상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에도 자본잠식률 50% 이상인 경우

➔ 감사보고서 제출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

* 2개년도 연속 자본잠식률 50% 이상의 경우,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실시

③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
➔ 사업보고서 제출시 상장폐지 절차 진행*

* 다만,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특수목적 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 자본잠식 해소 확인 시,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실시

5

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

공시내용

■ 정기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 그 결의내용과 의안별 표결결과를 공시

【TIP1】 사업목적 변경, 사외이사의 선임·해임, 집중투표제 도입·폐지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

【TIP2】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 법인은 금년도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 시 영문공시도 함께 진행하여야 함

공시시한

■ 주주총회 개최일 당일 중 공시

체크포인트

■ (관리종목 지정) 사외이사 비율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확인

- (사외이사) 사외이사 수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단 **개별/별도** 재무제표 기준 **자산총액 2조원 이상**인 경우 사외이사의 수가 3명 이상 & 이사 총수의 과반수
- (감사위원회) **개별/별도** 재무제표 기준 **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**인 경우 **상법상 구성요건***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

*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사외이사가 위원의 2/3 이상일 것
 위원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
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

➔ **최초 미충족시** **주주총회 결의 다음날*** 혹은 **사업보고서 제출기한**** 다음날 **관리종목 지정**

*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 전 지배구조 요건 미달 상태시
 **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지배구조 요건 미달 시

■ (상장폐지 절차 진행)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에도 사외이사 비율요건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미충족한 경우

➔ **주주총회 다음날** 혹은 **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날** **상장폐지 절차 진행**

※ [적용특례] 주주총회 불성립으로 인한 지배구조요건 미달의 경우,

- (관리종목 지정) 주총성립에 충분히 노력했음을 입증한 경우 예외 인정
 ≡ 입증 여부는 전자투표 시행, 주주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,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- (상장폐지)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 **상장폐지사유에서 제외**

6

사업보고서 제출

공시내용

-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

공시시한

-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(12월 결산법인: 2026.03.31.일까지) 제출
* 다만, 연장신고서 제출시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
- 단, 상법시행령 제31조제4항제4호에 따라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통지하는 경우, **통지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**

체크포인트

- 사업보고서 미제출 관련 조치
 - ①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미제출
➔ **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종료일(26.03.31.) 다음날 관리종목 지정**
 - ②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
➔ **경과기한 종료 후 상장폐지 절차 진행**
 - ③ 분·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후 사업보고서 미제출
➔ **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(26.03.31.) 종료 후 상장폐지 절차 진행**

■ 주식분산요건 미달 관련 조치

① (보통주) 주식분산요건 미달

*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일반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5% 미만 (일반주주 소유주식수 200만주 이상인 경우 제외)

➔ **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 관리종목 지정**

② (보통주) 주식분산요건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2사업연도 연속 주식분산요건 미달

➔ **사업보고서 제출시 상장폐지 절차 진행**

③ (우선주) 일반주주수 100명 미만

➔ **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 관리종목 지정**

④ (우선주) 일반주주수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2사업연도 연속 주주수 요건 미달 또는 최대주주등이 발행주식 전부 소유

➔ **사업보고서 제출시 상장폐지 절차 진행**

【TIP】 주식분산 요건 미달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주주명부 또는 주식분포상황표를 제출하여 해당 사유를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등 관련 조치 미적용

- **일반주주** : 최대주주등과 주요주주를 제외한 주주
- **유동주식수** :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통주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
 -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주식 수
 -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외국투자자가 소유한 주식 수. 다만, 내국인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이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.
 -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상의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보유되거나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전매제한 조치로 의무보유된 주식 수. 다만,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 등 의무보유 증명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.
 - 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」에 따라 의무보유되어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계속 보유하는 주식 수